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0-24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04.(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채납자 주소
1	김*주	1969.03.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6	₩ 10,54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6 길
2	성*식	1965.07.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8	₩ 15,63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35 길
3	김*태	1967.08.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63	₩ 4,537,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	구*록	1959.12.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24 0178200274100008828	₩ 17,380,56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